



# 개인 재산권 보호하는 혼전 합의서 한인들의 전통적 가치관과 혼전 합의서가 부여하는 재산권의 갈등

부부로 정을 쌓아 혼인 계약서의 원래 내용과는 상관없이 서로 더 주고 싶어서 재산 소유권의 변경이나 상속의 변경을 요청하는 예가 있는가 하면, 이혼을 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또는 답판을 지어달라는 예도 있다.

우리 사회에 이혼이 많아진 만큼 재혼 역시 많아졌다. 급증하는 재혼과 더불어 새로이 부상한 법적 이슈가 바로 혼전 합의서(Premarital Agreement)이다. 혼전 합의서란 혼인을 예상 혹은 계획하는 미래의 배우자가 될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그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이 채택한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원칙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각자 개인의 재산, 부채, 재정 관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규정하는 것으로 혼인이 성립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혼전 합의서를 작성하는 기본 목적과 취지는 결혼 이후에 취득한 모든 재산 및 수입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캘리포니아주 가정법과 상관없이 개인이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그로 인한 재산 증식, 혹은 혼인 이후에 개인이 버는 수입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하지는 것이다.

혼전 합의서는 '결혼은 하더라도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이다' 라고 규정해, 만에 하나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 에라도 재산 분배문제로 인한 이혼법정에서의 투쟁을 사전에 방지하지는 얘기다.

또 혼전 합의서를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이 사망한 후에도 개인의 생존 배우자와 개인의 직계 친족간의 유산에 대한 법정 투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개인이 원하는 대로 개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우리 한인들 사이에도 혼전 합의서는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재혼을 앞두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서류의 작성에 대해 문의를 해온다. 이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할 때마다 우리 한인들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혼전 합의서가 부여하는 개인 재산권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접하곤 한다.

즉 혼전 합의서 작성을 상대방이 제시해서 상담을 온 경우, 다른 쪽은 "일단 결혼을 하면, 부부가 서로 일생을 책



신혜원(가정법 전문 변호사)

입져주어야지요. 아니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것 따로 챙긴다면 그게 어디 부부 인가요? 그런 기본적인 신뢰도 없이 어떻게 믿고 사나요?'라며 흥분을 금치 못한다.

반면에 혼전 합의서의 작성을 원하는 의뢰인의 경우는, "한 번 이혼해보니까, 다시 할 것 아니더라고요. 뭐, 이번에는 절대 이혼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가끔 재산이나 사업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우선

경계부터 하게 되어 영 어색해져요. 혼전 합의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요, 이것 쓰자고 하면 속보이는 것 같아서요."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심정의 표현이다. 또, 이러한 질문은 남녀 성별의 차이 없이 거론되는 것도 새로운 시대 변천의 반영이라 하겠다. 이렇게 서로 껄끄러운 단계를 거쳐 혼전 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인한 뒤, 시간이 지나 그 의뢰인이 또 찾아오면 '아이쿠'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부부로 정을 쌓아 혼전 합의서의 원래 내용과는 상관없이 서로 더 주고 싶어서 재산 소유권의 변경이나 상속의 변경을 요청하는 예가 있는가 하면, 이혼을 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부터 답판을 지어달라는 예도 있다.

특히 200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혼전 합의서에 관련된 거주 가정법은 혼전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선결돼야 하는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한정된 지면 제약상, 구체적인 법적 요소는 차후에 언급할 기회를 희망하며, 우리 한인 정서에 비추어, 애기조차 꺼내기 껄끄러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완벽한 절차와 형식을 따라 작성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 이번 칼럼의 목적이라 하겠다.

문의 213-251-5401